

서울특별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36
----------	----

제안년월일 : 2010년 8월 13일

제안자 : 윤영위원장

1. 제안이유

- 「서울특별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」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의거 행정사무의 처리상황보고와 질문응답을 위해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하도록 하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기 위해 규정한 바,
- 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 공무원 범위를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관계 공무원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 관계 공무원으로 변경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,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관계 공무원으로 명확히 함.(안 제2조제1항)

3. 참고사항

- 관계법규 : 해당사항 없음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
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”를 “서울특별시교육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